

## 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250,674,835	7,520,245
1. 일반회계	243,382,852	7,301,486
2. 특별회계	7,291,983	218,759
의료보호기금	673,389	20,202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396,896	11,907
주차장	4,844,111	145,323
주거환경개선사업	162,147	4,864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461,000	13,830
기반시설사업	464,967	13,949
지하수관리	285,573	8,567
재정비축진	3,900	117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558,405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